

에이스상해보험<> 상품요약서

1. 가입자격 제한 등 상품의 특이사항

가. 가입자격 제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등 사고발생의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보험회사의 인수지침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009년 8월 1일 이전 자동갱신 첨부 계약의 갱신 계약에 한해 판매함

나. 상품의 특이사항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상해보험에서 담보하는 범위는 단순히 상해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특약으로 질병으로 인한 손해, 개인배상책임, 비용손해까지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2) 이 상품의 보험기간 (보험회사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은 통상 1년이며,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보험이므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으며,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가. 보장의 종류 및 보험금 지급사유

구분	담보	내용
기본	24시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1년 이내에 장해분류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사망시에는 가입금액 전액, 후유장해시에는 장해지급률에 따라 가입금액의 3%~100%를 지급
	24시간 상해의료비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를 지급

특약	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1년 이내에 ()%를 초과하는 고도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망시에는 가입금액 전액, 고도후유장해시에는 약관상의 장해분류표에 따라 보상
	상해 입원일당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일당액을 지급
	골절진단급여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약관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교통상해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사망/후유장해/의료비를 교통상해로 한정하여 보상
	질병사망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에 정한 80%이상의 후유장해가 되었을 경우 가입금액 전액 보상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일당액을 지급
	입원 및 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 및 수술을 받게 될 경우 입원비 및 수술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70%를 보상
	일상생활배상책임	피보험자 및 배우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나.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 1) 사망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2) 후유장해보험금 :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합니다.
- 3) 상해의료비 : 의료비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단,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하며,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본인의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4) 질병사망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5) 입원일당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입원일당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6) 골절진단급여금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골절진단급여금으로 지급합니다.
- 7) 휴업손해위로금 : 보험가입금액을 휴업손해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 8) 배상책임손해 :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제하고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1)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상해사망후유장해, 의료비, 기타상해담보의 경우

-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② 교통상해담보의 경우

- 보통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③ 배상책임손해담보의 경우

-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여행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3. 보험료 산출기초 및 보험료 예시

가.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나. 보험료 산출 예시

가입 예) 보험기간 1년, 상해급수1급, 40세 남자, 월납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기본계약	24시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억원
	24시간 상해의료비	500만원
선택계약	질병사망	5,000만원
보험료		18,440원

* 직무 및 성별,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수 있습니다.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가. 해약환급금의 산출기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나.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 1)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 :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 2) 그 밖의 해지 :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

※ 본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